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12월 9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2월 9일

3. 제안이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95. 1. 5. 법률제4874호)됨에 따라 위임조례 삭제
- 농업기반시설관리 업무 중 목적외 사용 및 폐지권한 위임
-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위임.
-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정비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사항 위임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으로는

- 지방과소관 사무 중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 농지개량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사무와 폐지권한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 지역경제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가격등의 표시에 관한 권한에 있어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 지역계획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기계식 주차장 인정 위임 사무와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승인 사무를 삭제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하여 일련번호의 재조정과 현행 위임사무의 중기조종사를 건설기계조종사로 자구수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사무, 정기 적성 검사, 신규 면허발급, 면허증 재교부, 면허증 대장 기재 및 보고, 면허증 반납,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 처분사무로 개정 조정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사무와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 및 주민편의 도모와 자치단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6. 첨 부

-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